

202.16 호

행정명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일부 2020년 5월 12일 화요일까지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

- 교육법(Education Law) 제8602 및 8603항, 뉴욕 법률, 규정 및 규칙(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 10장의 제58-1.5항은 개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표본에서 SARS-CoV-2 또는 항체의 검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검사를 수행하는 개인은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또는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승인을 받은 분석 또는 장치에 적합한 검사 인력에 대한 연방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 행위와 절차 법(Real Property and Proceedings Law) 제711항, 부동산법(Real Property Law) 제232-a항, 다주거지법(Multiple Dwelling Law) 제4항의 세부조항 8과 9, 그리고 기타 법이나 규정은 해당 법률이 중지 및 수정되지 않으면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단되고 수정됩니다. 이 관계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코로나19로 인해 쫓겨난 개인이나 단체,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30일 이상 임시 주택을 제공하는 호텔 소유자, 병원, 비영리 주택 제공자, 또는 임시 주택을 제공하는 기타 임시 주택 제공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들 사이의 것입니다.

또한, 행정부법 2-B조의 제29-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이번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5월 12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발행합니다.

- 뉴욕시 법학부(Department of Law)는 저렴한 주택 및 노숙자 보호소와 관련된 필수 프로젝트에 대해 법학부에 제출한 비조치 또는 비신고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본 행정명령 기간 접수된 비조치 또는 비신고 서신을 발부하여야 합니다. 제공 진술서 제출 또는 "신고 필요없음(no-filing required)" 서신의 발행에 앞서 신청자가 공익 또는 공적 자금을 요청하도록 허용하는 법학부에서 부여한 각 신청서에 대해. 뉴욕시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는 병원 또는 의료 시설, 저렴한 주택 및 노숙자 보호소와

관련된 필수 프로젝트에 대한 콘도미니엄 신고서를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 2020년 4월 또는 5월에 전당 대회가 예정되거나 열어야 하는 정당, 정당 지휘부 또는 정당 공무원은 권리 침해 없이 2020년 6월 1일까지 연기되어야 하지만, 해당 전당 대회가 원격, 전화 회의, 화상 회의 및/또는 기타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개최될 수 있고, 정당 전당 대회가 원격으로 열린다는 통지가 원격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전당 대회 적어도 5일 전에 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며 빌리지 내에서 신문 발행으로 한 번, 또는 정당의 웹 사이트, 또는 정당이 전자 우편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전 전당 대회의 참가자에게 전자 메일을 보내 알린 경우 통지가 만족된 것으로 간주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필수 사업체 또는 단체의 경우,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고객 또는 대중과 직접 접촉할 때 안면 가리개를 제공받고 착용하여야 한다. 사업체는 자체 비용으로 직원에게 안면 가리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Law) 제12항 또는 12-b항에 따른 명령인 것과 같이 지방 자치단체 또는 지방 법 집행기관에 의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 요구 사항은 4월 15일 수요일 오후 8시에 발효됩니다.

2020년 4월 12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함.

주지사

주지사 비서